

Human Information

: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의 역사를 되짚어 보고자, 협회는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제·개정 역사와 주요 골자를 소개합니다. 이 시리즈는 <산업안전보건법 제·개정사>(2015, 고용노동부)를 발췌하여 만들었습니다.

정리 대외홍보팀

산업안전보건법의 제·개정 요지(10)





2.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요지 (제31차~32차)

제31차 개정<법률 제11862호, 2013. 6. 4.>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전부 개정됨에 따라 이를 인용하고 있는 관계조문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개정법률 [2013. 6. 4, 법률 제11862호]

유해화학물질 관리법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화학물질관리법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유해화학물질 관리법」과 관련된”을 “「화학물질관리법」과 관련된”으로 한다.

⑩부터 ⑳까지 생략

제12조 생략

제32차 개정<법률 제11882호, 2013. 6. 12.>

[일부개정]

개정이유

근로자건강센터 등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무를 명확히 하며, 도급사업 시 도급인에게 수급인에 대한 유해성·위험성 등 정보 제공 의무를 부과하는 한편, 수급자의 설계변경 요청 근거를 마련하고, 안전인증 의무주체 및 인증대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①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를 선임하는 의무뿐만 아니라 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에게 업무를 수행하게 할 의무도 있음을 명확하게 규정함(안 제15조 및 제16조).
- ② 유해·위험 화학물질을 제조 또는 취급하는 설비 등에 대한 개조 등의 작업을 도급할 경우에 도급인은 수급인 등에게 해당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는 등의 의무를 부과함(안 제29조제5항부터 제7항까지).
- ③ 공사과정에서 건설공사의 수급인은 가설구조물의



붕괴 등 재해발생 위험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의견을 들어 발주자에게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의3 신설).

- ④ 안전인증을 받아야 하는 의무주체에 수입자를 추가하고 사용 중인 안전인증 대상품 중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계·기구에 대해서만 주요 구조부분의 변경 또는 설치·이전 시 안전인증을 받도록 함(안 제34조).
-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자에게 암 등 중대한 건강장해를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등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을 조사하여 조사결과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출된 조사결과 등을 검토하여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수입하는 자 등에게 근로자 건강장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도록 함(안 제40조).
- ⑥ 고용노동부장관이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증진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61조제3호 신설).

3. 조항별 제·개정 연혁 및 개정 내용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정('81. 12. 31)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차 개정('90. 1. 13)

개정사유

사업주, 근로자, 정부뿐만 아니라 기계·기구·설비 등의 설계자, 제조자 및 수입하는 자, 사업장 내에서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관리자, 안전담당자 및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당사자 등의 책임소재를 명확히 표현하고

– 각 계층의 안전의식을 새롭게 강조하여 궁극적으로 자율적인 재해예방을 위한 기반조성 및 재해감소 효과를 거두기 위함

개정내용

확립하여 →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란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란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를 말한다.
4. “근로자대표”란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을,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5. “작업환경측정”이란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측정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試料)를 채취하고 분석·평가하는 것을 말한다.

6. “안전·보건진단”이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할 목적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자가 하는 조사·평가를 말한다.
7. “중대재해”란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한 것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재해를 말한다.

제정('81. 12. 31)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라 함은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기타 업무에 기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이환되는 것을 말한다.
2. “근로자”라 함은 근로기준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자를 말한다.
3. “사업주”라 함은 사업을 행하는 자로서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

